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브리핑 자료

2018. 9. 1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 금일(9. 19.)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1급) 이○○ 및 부국장(2급) 최○○의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이○○을 구속기소하고, 최○○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 범죄사실 요지

- ① '13. 9. 국정원 수사관들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 ② '13. 12. 국정원 수사관들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중국 삼합변방검사참모로부터 '일사적답복'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위 이△△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를 통해 유우성 사건의 재판부에게 제출하여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 ▶ 일사적답복 :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근거 서류) 자료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 서류
- ③ '14. 3. 공모하여, 중국 협조자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녹음 자료가 보관 중이었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은닉
- ④ '14. 3. 이○○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유우성 사건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 받자, 자신의 관여사실이 기재된 문구가 없었던 것처럼 변조한 후 검찰에 제출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 ▣ 처분 내용

-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 대공수사국장 및 부국장도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관여하였고,
- 2014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조회가 회신되어 증거 조작 의혹이 커지자 국민적 관심 속에 구성된 2014년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위와 같은 사법방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각종 증거를 은닉,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남
- 수사결과, 총책임자인 대공수사국장을 구속 기소,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① 개요

### ○ 피고인

- 이○○(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2013. 4. 12.~2014. 8. 26.)
- 최○○(前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 2013. 4. 29.~2014. 9. 3.)

### ○ 공소사실 요지

연번	범죄사실
1	'13. 9.경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하여,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I/O)에게 유우성에 대한 출입경 기록을 실제 확인한 것처럼 이△△ 명의 영사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그 중 확인서를 유우성 사건의 공판담당 검사에게 증거서류로 제출 <b>【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b>
2	'13. 12.경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하여,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I/O)에게 삼합변방검사참모로부터 '일사적답복'을 전달받은 것처럼 이△△ 명의 영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유우성 사건의 공판담당 검사에게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공판담당 검사는 이를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b>【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b>
3	'14. 3. 10. 공모하여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협조자에 대한 녹음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조정황 언급이 있는 1차 조사 녹음테이프를 제외하고 위조정황 언급이 없는 2차 조사 녹음테이프 2개만을 제출 <b>【증거은닉】</b>
4	'14. 3. 말경 이○○은 검찰로부터 유우성과 관련한 예산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자, 자신의 관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정원 이○○ 과장으로 하여금 국장 보고 문구가 원본에도 없었던 것처럼 내·수사비 신청서를 변조하여 검찰에 제출 <b>【공문서변조 및 동행사】</b>

### ○ 수사경과

- '18. 4. 6. 국정원 수사의뢰
- '18. 5.~9. 국정원 관련자들 및 피의자들 각 조사
- '18. 9. 6. 피의자 이○○ 구속영장 청구 / 9. 10. 구속영장 발부
- '18. 9. 19. 피의자 이○○ 구속기소, 최○○ 불구속 기소

## ② 수사 결과

### ○ 검찰 처분 : 이○○ 구속 구공판, 최○○ 불구속 구공판

- 사형·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이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소유지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와 승인에 의하여 증거조작 행위가 이루어짐
-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2014년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자신들의 관여사실을 은폐하고자 수사대상자인 부하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하고, 나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에도 범죄사실 3, 4항과 같이 재차 증거은닉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 행위로 나아감
- 피고인들이 증거조작을 주도하고 검찰 수사로 들통날 우려가 커지자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지능적으로 철저하게 수사에 대비한 결과, 2014년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수사 당시 3급 처장 및 4급 과장급만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전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은 채 빠져나갔는데, 이번 수사로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전모가 밝혀져 기소한 것임

## ③ 참고사항

### ○ 피고인 이○○ 국장의 증거조작 지시 내용

- “영사사실확인서는 열악한 중국서민들이 사용 중인 A4용지(백색이지만 얇고 지질이 떨어짐)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여 협조자가 제공해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서 한국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것처럼 지능적으로 위장하라는 증거조작 지시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됨

### ○ 중국 협조자 김○○ 대상 국정원 자체 조사 증거의 은폐 상황

- ‘14. 2. 13.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출입경기록, 일사적답복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사실조사가 회신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찰 수사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 중국내 협조자를 귀국시켜 ‘일사적답복’ 등 서류가 문제가 없다고 해명이 가능한지 서류의 입수 경위를 신속히 자체 파악하여 ‘진본’이라는 진술이 확보 되면 기자회견을 하게 하여 증거조작 의혹을 무마하고자 검찰 소환에 앞서 신속히 먼저 조사를 실시하게 됨
- 그런데, 중국 협조자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솔직히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줬고 그 사람들한테 도장찍어달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니야 내가 다 썼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위조조작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거지’ 등 **뜻밖에도 위조를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되자 그 진술이 녹음된 1차 조사 녹음테이프 및 관련 녹취록 등 핵심 증거자료의 존재를 감추었음**
- 수사관을 교체한 다음, 2차 조사를 간이하게 실시한 후 위조 정황의 언급이 없는 2차 조사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만 존재하는 것처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음
- ※ 검찰수사팀에서는 중국 협조자를 조사한 후 녹음테이프 등 관련 증거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 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핵심 증거는 은폐하고, 관련성 없는 증거를 제출하였음

### ○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죄질 불량

- 피고인 이○○ 국장은 ‘14. 3. 이○○ 처장(3급)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조직을 믿고 소신 지켜야 명예도 지키고 내가 사는 길임” “모든 수사 실무는 전적으로 처장선에서 처리” “대한민국의 존망이 이 처장님 어깨에 달려 있음을 명심” 메시지 서신을 보여주는 등 이○○ 처장으로 하여금 ‘정점’으로 중국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위선을 비호하도록 수사를 방해하였음

### ○ 2014년 검찰 수사팀 증거조작 의혹 수사 및 재판 결과

- 2014년 검찰 수사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들의 부하직원 이○○(3급 처장)은 벌금 1,000만원, 김△△(4급 과장)은 징역 4년, 이△△(4급 과장) 및 권○○(4급 과장)은 각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 ☐